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자율적 조정 적용〉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667호)

2024.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 인 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자율적 조정 적용	3
※ 참고자료	13
1.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간 비교	1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정호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5.
3. 회부연월일 : 2024. 9.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함)를 설치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고 있음.

그러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는 각각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설치되어 공무원이 위원장이 되고, 사전에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어 수탁·위탁거래의 분쟁조정에 한계가 있음. 반면 분쟁조정협의회는 별도 사전 절차가 필요 없으며, 판사·검사 경력 또는 변호사·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되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을 위원장으로 지명하는 등 수탁·위탁거래의 분쟁조정에 관하여 보다 전문성·공정

성을 갖추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수탁·위탁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탁 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제1항 후단 신설).

Ⅲ. 검토의견

1.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자율적 조정 적용

개정안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는 경우에 있어서 위탁기업의 범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5(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①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후단 신설>	제28조의5(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① ----- ----- ----- ----- ----- -----, 이 경우 제2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위탁기업의 범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수탁·위탁거래 관련 분쟁이 생겼을 경우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¹⁾하거나,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하여

1) 제28조(분쟁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분쟁의 자율적 조정²⁾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중 위탁기업은 수탁·위탁거래에서 위탁을 하는 자³⁾로서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위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⁴⁾에 따라 평균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대기업, 중소기업

-
1. 제21조에 따른 약정서, 납품대금 연동 및 물품 수령증에 관한 사항
 2. 제22조에 따른 납품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2의2. 제22조의2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23조에 따른 물품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4.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의 임치에 관한 사항
 5. 제25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 2) 제28조의5(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①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분쟁조정협의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정부는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28조의9(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①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쟁 사건에 대하여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 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5. “위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 4)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⁵⁾.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수탁·위탁거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먼저 이의신청⁶⁾ 절차를 거친 후 이에 대한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 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5) 법제처 법령 유권해석(02-5083, 2022.9.8))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영업으로 매출액을 발생시키는 주체가 아니므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위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이의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국제입찰의 경우 제4조에 따른다)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是正)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위한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절차로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이하 “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통칭함)의 조정이 가능하게 됨.

따라서 개정안은 수탁·위탁거래 분쟁의 자율적 조정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위탁기업의 범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킴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에도 자율적 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개정안이 반영될 경우 이의신청 등의 사전 절차 없이 곧바로 자율적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 공무원이 지명⁷⁾되는 것과 달리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외부 위원이 지명⁸⁾되므로(참고자료 1), 조정 과정의 공정성 측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8)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서 보다 유리할 수 있어 보임.

다만, 개정안과 같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대상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업 간의 분쟁을 포함시키더라도, 제2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관련된 의무 또는 준수사항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적용되지 않아,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로서는 제28조의10제3항⁹⁾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개정안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현행법에는 수탁·위탁거래와 관련하여 위탁기업 및 수탁기업의 의무와 준수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음. 해당 의무 및 준수사항의 미이행과 관련된 사항이 분쟁 조정(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분쟁의 자율적 조정(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대상이 되며, 그 외의 사안에 대하여 자율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도록 하고 있음.

-
1. 법학·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 변리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분쟁조정협회를 대표한다.

9) 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③ 분쟁조정협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2.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쟁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표 1] 분쟁의 자율적 조정 대상

위탁기업의 의무 등	조정 대상(제28조제1항)
· 제21조(약정서의 발급) 위탁기업의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연동 적용 및 물품 수령증 발급 등	· 제1호 제21조에 따른 약정서, 납품대금 연동 및 물품 수령증에 관한 사항
·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 지연이자·어음 할인료 지급의무 등	· 제2호 제22조에 따른 납품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조정협의 개시의무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거부 금지 등	· 제2호의2 제22조의2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제23조(검사의 합리화) 위탁기업의 공정·신속한 납품 물품 검사 의무 등	· 제3호 제23조에 따른 물품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관한 규정	· 제4호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의 임치에 관한 사항
· 제25조(위탁기업의 준수사항) 부당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 부당감액 금지,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 등	· 제5호 제25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예를 들어 일반적인 수탁·위탁거래에서는 위탁기업이 현행법 제21조에 따라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탁기업에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탁기업은 분쟁 조정 또는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국가와의 거래 시에는 현행법 제21조에 따른 약정서가 아니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¹⁰⁾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므로, 현행법 제21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의 목적

조와 관련된 제28조제1항제1호의 사항은 국가와의 거래에서의 분쟁의 자율적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것임.

따라서 개정안이 반영되어 분쟁의 자율적 조정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위탁기업에 포함시키게 되더라도, 현행법 체계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은 자율적 조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될 것으로 보임.

또한, 분쟁의 자율적 조정은 기업 간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강제성이 없으며 조정 진행에 대한 합의를 필요로 함¹¹⁾. 그런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²⁾. 이 중 중재¹³⁾의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

5. 위험부담

6. 지체상금(遲滯償金)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11) 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④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2.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

등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¹⁴⁾의 판정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절차이며, 상호 합의를 통한 효율적 분쟁 해결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종합하여 설명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은 법률 소관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법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임. 절차의 편의성, 분쟁 처리의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소관 법률의 개정 등을 통해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1.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따른 중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1.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따른 중재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조정을 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정한 계약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3) 「중재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3. “중재판정부”(仲裁判定部)란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판정을 내리는 단독중재인 또는 여러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인단을 말한다.

14) 「중재법」

제11조(중재인의 수) ①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의 수는 3명으로 한다.

제12조(중재인의 선정)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선정될 수 있다.

② 중재인의 선정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¹⁵⁾.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법의 적용 대상은 대기업,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률 적용은 입법목적과 맞지 않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수·위탁분쟁조정 협의회의 자율적 조정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수탁·위탁기업에 부과된 의무사항(현행법 제28조제1항 각 호)이 동일하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 체계상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국가계약은 일반 민간계약과 상이한 특성¹⁶⁾이 있기 때문에 국가계약 전문가가 포함된 소관 위원회에서 조정하

1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나 계약에 관한 예외조항이 필요한 경우에도 각 개별법에서 이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보다 소관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률 조문의 이해나 적용 측면에서 보다 알기 쉽게 되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16)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의 경우 형평성, 공공성, 투명성 등을 고려한 낙찰 및 계약 조건이 많고, 이러한 공공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 타 법률의 분쟁조정 규정에서도 국가계약법 등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하고 있으며, 개정안과 같이 국가와의 거래에 관한 분쟁을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하도록 할 경우, 건설산업 등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2.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

는 것이 타당하고,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분쟁조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교수 등의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운영 중¹⁷⁾이며, 개별법상 다른 위원회가 분쟁조정 기능을 중복적으로 수행할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그 밖에 법무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의 거래를 현행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등을 위한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가 계약금액 조정 등 업무를 수행할 경우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될 수 있으므로, 법률 간 관계를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467

한다.

17)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정부위원 7인, 민간위원 8인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은 국가계약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교수, 기술·원가계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고,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도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운영 중임.

【참고자료】

1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간 비교

구분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법적근거	상생협력법 제28조의5	국가계약법 제29조	지방계약법 제35조
목적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	국가계약 관련 분쟁을 심사·조정	지방계약 관련 분쟁을 심사·조정
설치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위원규모	20명 이내(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위원장 포함)
위원자격	전원 위촉 위원: 대학교수, 판사·검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관련 경력의 4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 기타 전문가 등	- 정부위원: 기재부, 국방부, 행안부, 국토부, 조달청 소속 고위공무원 - 민간(위촉)위원: 교수, 변호사, 회계 및 조달 계약업무 전문가 등	- 정부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 민간(위촉)위원: 교수, 변호사, 회계 및 조달 계약업무 전문가 등
위원장	변호사 자격이 위원 중 중기부장관이 지명	기재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	행안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
기능	- 다음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 - 약정서, 납품대금 연동 및 물품 수령증에 관한 사항 - 납품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 물품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 기술자료의 임치에 관한 사항 - 위탁기업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의 시정 또는 취소를 위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 청구를 심사·조정 - 계약 체결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정한 경우 조정신청에 대한 분쟁의 조정	- 지자체의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의 시정 또는 취소를 위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청구의 심사 및 조정 - 계약 체결시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정한 경우 조정신청에 대한 분쟁의 조정
조정효력	민사상 집행력 (당사자 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재판상 화해 효력 (확정판결의 효력)	재판상 화해 효력 (확정판결의 효력)